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사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학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과학기술대학 각 학부(과)의 프로그램별 “심화”프로그램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공학교육인증과정(이하 “심화과정”이라 한다)이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은 공학교육인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인증과정(이하 “일반과정”이라 한다)이다.

제3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심화과정에 소속된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심화과정으로의 편입과 과정 변경

제4조(심화과정으로의 편입) ①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부(과)의 학생은 입학(신입, 편입, 전과 등)과 동시에 심화과정에 소속된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일반과정에 소속되며 심화과정으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과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정 변경) ①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한 신입생 중 심화과정에서 일반과정으로의 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과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화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졸업 전 1학기 시작 이전까지 일반 과정으로 과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일반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여도 졸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졸업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2016년 신입생부터 단일인증을 적용하므로 인증을 포기할 수 없다. 단, 예외사항(융합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교환학생, 재입학생, 캠퍼스 자율전공), 그 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는 인증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인증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수·연계전공 등으로 예외인정조항을 적용받는 경우, 졸업시점에서 복수·연계전공 등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된다.

제 3 장 프로그램명

제6조(프로그램명 구분) 각 학부(과)의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의 프로그램명 및 한글과 영문 전공 명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졸업증서와 성적증명서에 명기한다.

① 과학기술대학 프로그램명과 전공 명칭

학부(과)	프로그램	전 공 명 칭	
		한글 명칭	영문 명칭
전자·전기 융합공학과	전자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Electronic Engineering
	전기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Electrical Engineering
	전자·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	Engineering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심화	소프트웨어융합공학심화	Software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소프트웨어융합공학	소프트웨어융합공학	Engineering
나노신소재 학과 ¹⁾	재료공학심화	재료공학심화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재료공학	재료공학	Engineering
건축공학 전공	건축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	건축공학	engineering
기계정보공 학과	기계정보공학심화	기계정보공학심화	Mechanical and Design Engineering
	기계정보공학	기계정보공학	Engineering
조선해양공 학과	조선해양공학심화	조선해양공학심화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조선해양공학	조선해양공학	Engineering
바이오화학 공학과	화학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Chemical Engineering
	바이오화학공학	바이오화학공학	Engineering

제 4 장 졸업 요건

제7조(졸업자격) ① 심화과정에 속한 자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영어 관련요건, 설계학점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제8조(졸업학점) ① 2015년 이전 입학생은 전문교양 20학점, 전공기초영어 2점(2014학번부터), MSC 30학점, 전공 54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 학점은 50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2016년 이후 입학생은 전문교양 23학점, 전공기초영어 2학점, MSC 30학점, 전공 54학점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 학점은 4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③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는 사이버 강좌 및 서울캠퍼스 개설강좌 수강 시 전문교양 및 MSC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 ④ 2022년 입학생부터는 전문교양 23학점, 전공기초영어 2학점, 특성화교양 3학점, SW/데이터활용역량인증과목 9학점, MSC 30학점, 전공 54학점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40학점까지 인정한다.

제9조(전문교양의 영역별 최소 요구학점) ① 2015년 이전 입학생에 속한자는 기초교양 6학점 이상, 일반교양 5개영역(1~5영역) 중 4개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로 1과목이상, 핵심교양 3개영역(6~8영역)에서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016년 이후 입학생은 기초교양 6학점 이상, '예술과 디자인(4영역)'과 '제2외국어와 한문(5영역)'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7개 영역(1. 언어와 철학, 2. 사회와 경제, 3. 역사와 문화, 4. 예술과 디자인, 5. 제2외국어와 한문, 6. 법과 생활, 7. 공학의 이해) 중 6개영역에서 영역별 최소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편입생의 경우 전문교양의 영역별 최소 요구학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 입학년도부터는 총 2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0조(MSC의 분야별 최소 요구학점)

① 과학 1과목(1Set), 수학 1과목, 전산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학분야 교과목은 프로그램별 내규에 따라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실험을 포함한 교과목(1Set)으로 편성·이수하여야 한다. 단, 바이오화학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에 속한 자는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 따라 과학분야 2과목(2Set)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어(외국어) 관련 요건) ① 심화과정에 속한 자(2013 학번부터)는 아래에 제시된 외국어 공인시험 중 하나에서 해당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하고, 유효기간 내의 성적표를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재학기간 중 1회 제출). 다만 아래 시험별 인정 최저점수는 공식기관의 개정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1 공인 영어시험 점수

토익	토픽스	뉴토픽스	토픽스 (iBT)	토익- 스피킹	OPIc	토픽스- 스피킹
600	482	227	69	110	IM1	43

①-2 공인 중국어 및 일본어 시험 점수

HSK	JPT
4급 (단, 210 이상)	600

②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영어(외국어) 졸업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삭제>

구분	세부요건
영어	교양선택 영어개별 전과목 중 2과목 이수
중국어	교양중국어(1) 및 교양중국어(2) 이수
일본어	교양일본어(1) 및 교양일본어(2) 이수

③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기초영어(I / II) (전공기초)중 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④ 다만 각 프로그램의 운영상 부득이하게 상기 조건을 상회하는 영어(외국어) 졸업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에 따른다. <삭제>

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2조(설계관련 최소 요구학점) ① 기초설계(또는 입문설계) 교과목, 요소설계 교과목, 종합설계 교과목을 반드시 순서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 ② 프로그램별 설계 최소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최소 이수학점
재료공학심화	9학점 이상
조선해양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12학점 이상
전자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기계정보공학심화	
소프트웨어융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③ 전공 교과목의 설계학점은 프로그램 내규에서 정한다.

제13조(이수체계 준수) 심화과정에 속한 자는 소속 프로그램의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 5 장 전입생 (편입/전과/복학생)의 수용정책 및 학점인정

제14조(수용정책) ① 각 프로그램에서는 편입생, 전과생의 심화과정 진입 시에 학습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학생과의 학습능력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학점인정절차) ① 전입생이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교양, MSC, 전공 학점으로 분류하여 인정한다. ② 편입생과 전과생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이 현 학부(과)의 학점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복학생의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의 학점이 현재의 학점과 다를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전공 분야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습성과 기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대체과목으로 인정하되, 대체과목의 학점인정은 동일교과목 기준을 따른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 ⑤ MSC 분야의 교과목에 대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각 프로그램에서 제출한 MSC 교과목 수강목록을 심사하여 인정하되, 대체과목의 학점인정은 동일교과목 기준을 따른다. ⑥ 전공학점은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⑦ MSC 학점은 최대 20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2018년 입학한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6 장 심화과정 프로그램 운영

제16조(프로그램내규) ①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내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내규를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정 시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 개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 교육목표) 각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을 프로그램내규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제18조(프로그램 학습성과) 각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을 프로그램내규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심화과정 학생 관리) 각 프로그램에서는 매 학기 초 학년별 심화과정 학생의 명단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공교과목 설계학점) ① 각 프로그램은 전공 교과목의 설계학점을 설정하고 프로그램내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설계학점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공 교과목의 설계학점은 각 프로그램의 내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이수한 설계학점은 수강당시 설정된 설계학점을 따른다. ⑤ 전공 교과목의 설계학점을 변경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교과목 학습성과 항목별 가중치) ① 각 프로그램에서는 전공과목의 교과목 학습성과 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 학습성과 가중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프로그램은 전공 교과목의 학습성과 항목별 가중치를 변경할 경우 수정된 내용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교양 . MSC 교과목) ① 각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 담당교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양 주임교수와 각 프로그램의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③ 교양 주임교수는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속적 품질개선) ①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를 매년 말에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각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도를 교육목표 평가시기에 맞추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각 프로그램에서는 교육목표 평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교육개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2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에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장과 센터소장은 프로그램의 연차보고서의 개선사항을 공학교육인증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심화과정 학생 수강지도) 각 프로그램에서는 매 학기 심화과정 학생의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수체계) ① 각 프로그램은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과목 이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공 교과목 이수체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내규로 정한다. ③ MSC 및 교양 교과목 이수체계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정한다.

제26조(프로그램 졸업요건 변경) ①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내규에 추가적인 졸업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내규에서 규정한 졸업요건의 변경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7 장 심화과정 졸업사정

제27조(졸업예정자 확인) 각 프로그램은 매 학기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 학기의 심화과정 졸업예정자 명단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졸업사정) ① 졸업사정 절차는 각 프로그램내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각 프로그램은 매 학기 종료 1개월 전까지 졸업사정을 관련 시행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프로그램은 졸업사정 결과를 근거로 심화과정 졸업대상자 명단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내규는 2004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과정에 소속된 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 조치) 이 개정 내규에 첨부된 졸업요건의 영어 관련 요건은 2010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2011년 9월 1일 이전 개정 내규는 폐지한다.
9.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이수내규의 졸업조건은 2012년 2월부터 졸업하는 모든 심화과정 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10. (경과조치) ① 제13조(이수체계준수) 2009년 3월 이전 입학자에게는 이수체계준수를 유예한다. 단, 유예기간은 2017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11.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경과조치) ①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에 속한 자에게는 2013년 3월 신입생부터 제10조(MSC 분야별 최소 요구학점) 1항을 적용한다. ② 제12조(설계관련 최소 요구학점)에 따른 경과규정은 각 프로그램 내규에 규정하여 시행한다.
13.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영어관련요건)는 2013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5.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